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59
----------	----

발의일자 : 2006. 10. .
발 의 자 : 이재호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 우리 시의회의 시정질문제도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시행하여온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은 심도 있고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곤란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점이 있는 바
- 국회 및 일부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문일답방식의 도입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정질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시정질문의 방식을 종전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제2항)
- 질문순서는 일문일답이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우선함(안 제73조의2 제3항)
- 의원의 질문시간을 20분으로 하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 미포함(안 제73조의2 제4항)
-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보충질문 시간을 10분으로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 미포함(안 제73조의2 제5항)
- 추가 보충질문은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음(안 제73조의2 제6항)
- 질문의 요지를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송부(안 제73조의2 제7항)

□ 참고사항

- 질문방법 및 질문요지서 송부 비교
- 국회법
- 경기도·서울시·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3조의2(시정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및 교육 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 ②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중 한가지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③질문순서는 일문일답이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우선한다.
- ④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⑥제5항에 대한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⑦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 질문 시간 48시간 전(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제4항, 제33조제5항, 제38조제3항 및 제7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제151회 제2차 정례회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3조(발언의허가)</p> <p>①~③(생략)</p> <p>④시정에 관한 질문 중 보충질문에 한하여 <u>의원의 요구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u></p> <p>⑤제4항에 대한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자의 양해를 구하여 <u>1회 5분에 한한다.</u></p> <p>⑥(생략)</p>	<p>제33조(발언의허가)</p> <p>①~③(현행과 같음)</p> <p>④(삭제)</p> <p>⑤(삭제)</p> <p>⑥(현행과 같음)</p>
<p>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p> <p>①~②(생략)</p> <p>③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은 <u>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으며 총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개별질문과 개별답변은 각각 5분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④(생략)</p>	<p>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삭제)</p> <p>④(현행과 같음)</p>
<p>제73조(시장·교육감 등의 출석요구)</p> <p>①~③(생략)</p>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p>	<p>제73조(시장·교육감 등의 출석요구)</p> <p>①~③(현행과 같음)</p> <p>④(삭제)</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73조의2(시정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u>기간을 정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u></p> <p>②시정에 관한 질문은 <u>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문·일괄답변</u> 방식으로 하되, 이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p> <p>③질문순서는 <u>일문일답이 일괄질문·일괄 답변에 우선한다.</u></p> <p>④의원의 질문시간은 <u>20분을 초과 할 수 없다.</u>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⑤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u>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다.</u> 이 경우 질문시간은 <u>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u> 질문시간에는 <u>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u></p> <p>⑥제5항에 대한 본 질문을 하지 않은 <u>의원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u></p> <p>⑦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u>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u> 의장은 <u>늦어도 시정 질문시간 48시간 전(휴무·공휴일은 제외 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 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u></p>

《참 고 자 료》

□ 질문방법 및 질문요지서 송부 비교

구 분	질문방법	질문요지서 송부(시간)	질문시간 (분)	비 고
국 회	일문일답	48	20	
서울특별시	"	48	40	답변포함
부산광역시	"	48	20	
대구광역시	일괄질문 · 답변	24	20	
인천광역시	일괄질문 · 답변	24	20	
광주광역시	일문일답, 일괄질문 · 답변	72	20	
대전광역시	"	48	20	
울산광역시	"	24	20	
경 기 도	"	72	20	
강 원 도	일괄질문 · 답변	72	20	
충 청 북 도	"	96	20	
충 청 남 도	일문일답, 일괄질문 · 답변	48	20	
전 라 북 도	일괄질문 · 답변	24	20	
전 라 남 도	일문일답, 일괄질문 · 답변	48	20	
경 상 북 도	일괄질문 · 답변	72	20	
경 상 남 도	"	72	20	
제 주 도	"	24	20	

※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을 제외함.

□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④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의장은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회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집행부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분기별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전반 또는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집행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의 보충 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질문자의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본조삭제 04. 7. 23]

⑦ 의장은 제3항의 질문자의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자의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자를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의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⑧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 및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⑩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질문일 3일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질문일 2일 전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2(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 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삭제(2003.3.10)

⑥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질문은 질문하는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은 두 번에 나누어 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번째 하는 질문의 시간은 첫 번째 질문시간의 나머지 시간으로 하되,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시정질문 의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를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 첫날 48시간전(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6항의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질문은 매년 3월·7월 및 10월중의 임시회 회기중에 이를 행한다.